

「농지법」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 안내

「헌법」과 「농지법」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
아래와 같이 개정됨

■ 개정사항 안내

- 시행일자 : '23.8.16.
- 개정내용 :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 요건 개정
 - (기존) 임대수탁사업의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위탁가능
 - (개정)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가능

〈임대수탁사업 참여 조건 비교표〉

| 구분 | 기존 | 개정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탁 요건 | 개인이 소유한 농지 |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|

- ※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
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※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증빙가능합니다.
- ※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이 가능합니다.

※ 임대수탁 참여제외 농지 체크리스트 ※

- 취득일자로부터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
- '96.1.1 이후 취득한 법인 소유 농지
-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농지 (단, 공유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)
- 주말 · 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(단, 위탁자가 농업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)
-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 ·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농지
- 「농지법」제10조에 따라 시장 · 군수, 구청장이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농지
- 「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 의무기간(2년)을 마치지 않은 농지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· 공업지역의 농지
-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· 허가 · 승인 등을 포함한다)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
-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 · 지구 · 구역 · 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


상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
임대수탁사업 참여가 제외됩니다.

해당 요건 이외에도 농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
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

농지은행 상담문의 : 1577 - 7770



농지은행포털